

2026년 울진군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예비창업가 2차 모집 공고

- 2026년 울진군 경북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청년예비창업가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자분들은 공고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울진군수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가. 좋은 아이템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창업·창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예비창업자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한 경북형 창업생태계 조성

☐ 사업총괄 : 울진군, 운영기관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모집인원 : 청년 (예비)창업가 및 초기창업가(1년 이내) 1명

☐ 모집대상

- 울진군에 주소(공고일 기준)를 둔 만 19세 ~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1년 이내인 자(2025. 9. 이후 사업자등록자)

* 대상기준 : 생년월일 (1977. 1. 1. ~ 2006. 12. 31.)

* 1차 공고 미달 시, 재공고부터 청년의 연령(만 19세 ~ 49세) 범위 내 조정

☐ 모집분야

분야	대상업종
기술창업	기계, 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 섬유, 생명, 식품,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지식창업	지식콘텐츠, 마케팅홍보, 전문컨설팅, 디자인, 번역, 웹디자인, 프리랜스, 통신업, 문화서비스업, 통신판매업, 아이디어 창업 등
6차산업창업	농·어업과 연계된 가공 및 서비스업(지원제외 대상 업종 제외)
일반창업	부가가치가 높은 소상공인창업, 지역본사 프랜차이즈창업 등

○ 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

구분	6차산업 관련 사업 분야
가 공	지역 농·어특산물을 생산 및 가공사업화 시킨 형태
농·어촌 외식	농·어촌에 있는 우리 고유의 솜씨를 외식산업으로 연결한 형태
농·어촌교육농장	농·어촌이 가지는 교육적 기능을 전문화 시키고 사업화 시킨 형태
농·어촌 민박	지역의 주거공간과 서비스공간의 융복합된 형태
농·어촌체험관광	농·어촌의 다원적 가치를 관광서비스사업과 연계시킨 형태
유통직매장	유통서비스에서 불필요한 비용요소를 줄여 상생체계를 구현한 형태

□ 지원제외 대상업종

분 야	대 상 업 종
금융부동산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요 식 숙 박	숙박, 음식점업(단, 지역특산물 활용한 음식점 제외)
유 흥 접 객	무도장, 유흥접객영업(주점 등)
레 저	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베팅업
기 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운영위원회에서 판단 시

□ 지원제외 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 불량 거래자로 규제 중인 사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 동일 또는 유사한 정부의 타 사업으로부터 동일기간 내 중복지원 수혜자
 ※선정 후 중복지원 수혜이력이 조회되는 경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부과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폐업 후 2개월 미만자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9. 1.(화) ~ 9. 10.(목)

□ 신청방법 : 우편접수(등기), E-mail(방문접수 불가)

□ 신청서류 : 붙임 신청서류* 참고

* 신청서류는 붙임서류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접수

- 울진군청 (<http://www.uljin.go.kr>)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http://mire.re.kr>)

비목	주요내용
공통사항 (필수서류)	1) 참여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기업)정보 제공 및 신용조회동의서1부. 4) 주민등록 초본 1부.(생년월일 표시, 공동 제출인 경우 팀원 모두 제출) 5) 사실증명원 1부(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원, 팀원 모두 제출)
초기창업가 (해당자 제출서류)	6)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7)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벤처부 발급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https://sminfo.mss.go.kr/er/er/EER009R0.do)

□ 제출방식 : 제출서류 일체를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압축) 제출*

* 파일명 : (참여자 이름)_2026년 울진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신청_제출일

* 작성한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한글파일 1부와 PDF 파일 1부 제출 필수

□ 접수 및 문의사항

○ 주 소 : (36315) 울진군 죽변면 해양과학길 22,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E-mail : taeha@mire.re.kr

○ 문 의

- 울진군청 인구정책과 일자리지원팀 (☎054-789-6473)

-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연구개발팀 창업사업 담당자(☎054-780-3461)

3. 주요지원내용

- ☐ 총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약 3개월)
- ☐ 세부지원내용
 - 창작·창업공간 연계 지원
 - 인터넷, 사무실 집기 지원
 - 회의실, 공용사무기기, 상담실, 휴게실 지원
- ☐ 창업활동비 지원
 - 창업활동비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26. 11. 30.
 - 총 지원금액 : 최대 1,200만원
 - 본인 부담금 : 없음
- ☐ 창업활동비 집행 기준 ((재)환동해산업연구원 실시 공통의무교육 20시간 이수조건)
 - 의무교육
 - ▷ 협약 기간 내 총 20시간(분기별 5시간 이상) 운영기관 의무출석
 - 사용원칙
 - ▷ 사업기간 내에 집행하며 창업아이템 개발 및 창업활동에 한하여 사용
 - ▷ 보조금전용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현금인출 사용금지)
 - 사용분야 ①상품화제작비, ②정보활동비, ③공간임차료, ④시장개척 및 홍보비, ⑤일반수용비, ⑥회계처리비, ⑦4대 보험료
 - ※ 상기 7개 분야 중 한 분야가 전체 활동비의 70% 초과 금지
 - ※ 정보활동비: 창업자 역량 강화(총 지원금의 20% 이내)

상품화제작비		
①	구분	세부기준
	재료구입비	시제품(샘플)제작에 필요한 재료구입비(판매목적의 재료구입 불가)
	외주용역비	창업자(팀)가 시제품 제작이 불가능할 경우 사용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회사에 한함)
	장비임차료, 시험 분석료	장비임차료, 시험 분석료
	※ 장비임차료: 차량 임차 불가, 협약기간 이내의 임차료 월 납부 금액에 한하여 집행	

②	정보활동비(총 지원금의 20% 이내)	
	구분	세부기준
	정보활동비	도서 및 자료 구입비
		교육비(단, 사업과 관련된 교육만 가능하며, 교육 수수료 혹은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발급이 가능한 교육 기준(시험응시료 사용 불가))
		관련 전시·박람회 참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기업애로 컨설팅: 지원기업 관련 기술, 인사, 노무 재무분야 등		

③	공간임차료(총 지원금의 50% 이내)	
	구분	세부기준
	공간임차료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장소임차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예정)장소를 원칙으로 함 ※ 임대인의 사업자등록증의 업종·업태·종목에 '비거주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 등이 기재된 경우에만 집행(거주형태 공간의 임대료 집행 불가)
		※ 임대보증금, 관리비 집행 불가

④	시장개척 및 홍보비	
	구분	세부기준
	홍보비	영상 및 카탈로그 제작, 온·오프라인 광고비, CI 및 BI 제작, 홍보물품 제작 등(판매목적의 물품구입 불가) 등
	제품디자인	제품포장 또는 상품패키지 디자인비
	전시회 참가비	부스임차비용 및 장치비용
	제작비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쇼핑몰 제작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각종 인증획득비	사업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품 및 시스템인증비

⑤	기타 항목	
	구분	세부기준
	일반수용비 (총 지원금의 10% 이내)	사업내용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소모품, 사무용품 등 ※식대, 임차료, 제세공과금, 자산성격의 물품(컴퓨터, 사무기기, S/W 등) 구입은 불인정
	회계처리비	세무대리인을 통한 세무기장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
⑥	4대 보험료(5명이내)	피고용자의 4대 보험료(기업부담금)

4. 심사 및 평가

□ 선정심사

○ 선정방법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평가
- 발표심사 : 서류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선정심사기준에 의해 평가
- 심사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발표심사는 PPT자료로 10분 발표,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 *발표자료(PPT)는 심사일 2일전까지 이메일 제출
- 선발예정인원에 대해 심사기준에 따른 심사결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차년도 심사결과 기준점수에 해당하면 선발대상자 명부에 등록 가능하며, 중도 포기 발생시 명부 순위에 따라 차명 의사 확인 후 즉시 대체 가능(추가모집절차 생략 가능)

○ 세부일정

단 계	일정	세부내용
모집공고	2026. 9. 1. ~ 9. 10.	울진군청,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신청접수	2026. 9. 1. ~ 9. 10.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서류·발표 심사	2026. 9. 16.(변동가능)	(재)환동해산업연구원
↓		
심사 결과발표	2026. 9. 16.(변동가능)	홈페이지(개별통보)
↓		
최종선정자 협약체결	2026. 9. 21. ~ 9. 23. (변동가능)	홈페이지(개별통보)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참고사항

-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창업활동비는 차등 배정될 수 있음

□ 경고 및 협약해지

○ (경고) 다음의 경우 창업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음

- ▷ 운영기관 주관 공식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 ▷ 교육시간(창업아카데미 교육 및 아이디어톤 등) 의무출석을 위반한 경우
- ▷ 사업진행도 점검 결과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이 부진한 경우
- ▷ 창업활동비 정산서 및 보고서를 기한일로부터 2주일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협약해지) 다음의 경우 참여자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진행도 점검결과 사업계획에 따른 진행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중간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 ▷ 계약기간 중 타 기관의 창업지원금을 받을 경우 (융자금 제외)
- ▷ 사업비 사용내역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 ▷ 운영기관에 사전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은 경우
-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 경고조치를 2회 받은 경우
-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사람

5. 사업 참여시 유의사항

- 사업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의무 제출
- 의무교육(협약 기간 내 총 20시간(분기별 5시간) 이상 운영기관 의무출석)은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운영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특별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감점, 경고, 협약해지 사항)
- 참가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해당사항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예비)창업자에게 있음

6. 지원금 회수기준 및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부정사용자에 대한 참여제한 및 지원금 회수기준>

참여제한 및 지원금(활동비) 회수사유		제재 및 환수범위	
		제한기간	지원금 환수액
1	사용내역 허위보고 및 사용용도 이외 사용	2년	지원금 총액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 교부받은 경우	3년	지원금 총액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	3년	지원금 총액
4	보고서 미제출 등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지원중단, 퇴출

* 지원금 환수기준

1. 사용내역허위보고, 사용용도 이외 사용 :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
2.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 총액 환수
3.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화 과제수행 포기 : 기 집행금액 포함 지원금 총액
4. 시정조치 불이행 : 지원중단, 퇴출

*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병, 교통사고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창업자가 협약기간(보증기간은 협약기간+3개월)내 정당한 사유없이 폐업을 하거나 의무위반으로 협약이 해지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보험사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지방보조금 시행령 제21조 제1항 관련)>

-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위반행위		제재부가금 부과율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지방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100%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중병, 교통사고 등으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함		

- 부과권자는 제1호가목2)·3) 및 같은 호 나목2)의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부과권자는 제1호나목3)의 위반행위가 해당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